

[별표 5]

군용화장치 설치 세부기준(제4조의2 관련)

※ 안전기준 제46조에 따라 최대적재량 8톤이상 9톤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에는 핀틀후크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핀틀후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차대 가장 뒷부분에 아래와 같은 형상의 핀틀후크 부착구가 설치되어 있고, 프레임의 강도를 보완할 수 있는 보강재를 설치한 경우에는 핀틀후크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.

핀틀후크 부착구 형상

(단위 : mm)

